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 확대 >

■ 황운하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10744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 확대(안 제22조제4항)	2

【황운하의원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6. 12.

다. 회 부 일 : 2025.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 확대(안 제22조제4항)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회의 중 서면의결이 가능한 대상의 범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22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 ----- ----- -----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⑤ ~ ⑦ (생 략)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u>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u> 」 제2 <u>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u> <u>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u> <u>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u> <u>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u> <u>정보</u> ⑤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방심위의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1)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같은 조 제4항2)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3)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

- 1) 법 제22조(회의 등)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법 제22조(회의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

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해당 사유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2호 신설).

○ 기존에 방심위는 통상 전체회의는 월 2회, 법 제22조제5항4)에 따라 구성된 4개의 소위원회 중 방송심의소위와 광고심의소위는 주 1회 대면 회의, 통신심의소위는 주 2회 대면 회의, 디지털범죄심의소위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매일 서면의결(전자심의)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음.⁵⁾

○ 개정안은 금융사기 정보의 경우 서면의결 대상이 아님에 따라 차단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일응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 **법 제22조(회의 등)** ⑤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현재 방심위는 방심위원 9명 중 2명만 남아있는 상태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임.

- 다만, 방심위가 현재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대면회의를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는 안전에 대해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동일한 취지와 내용으로 제22대에 발의되었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85)」은 2025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대안반영폐기)되었고, 동 내용을 포함한 대안(의안번호 2208485)이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지만, 대통령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과 부결(2025.4.17.)된 바 있음.⁶⁾
-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정보로 인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방심위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심위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6) 동 대안의 경우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심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서면의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내용을 적극 수용한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합의제 기관의 원칙적인 의결방식이 아닌 예외적으로 서면의결을 허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이 규정하는 “~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서 “중대한”이라는 표현은 명확성 원칙 위배 소지, “중대성” 여부에 대한 방심위 판단으로 절차가 지연될 소지도 있다는 점에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종합해보면, 방심위의 회의 중 서면의결 사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대면심의를 통해 위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226